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報告書

1993. 12. 6.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11月 18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3年 11月 24日 回附
- 다. 上程日字: 第22回 永登浦區議會(定期會) 第1次 委員會(1993年 12月 6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尹鼎重)

가. 提案理由

-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구성원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主要骨子

- 민원의 적극해결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의견청취 및 조사를 조정하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폐지함.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 (1) 내무부 자기 12209-409('93. 8. 2)호 및 시정 12209-671('93. 8. 21)호로 行政刷新次元에서 우리區에서 設置 運營中인 各種委員會中 그 機能이 유사하고 重複運營으로 非效率的인 委員會는 果敢히 整備하라는 市長 指示에 따라
- (2) 現行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建築民願調整委員會는 이를 廢止하고 서울特別市 民願審議委員會의 機能을 다음과 같이 補充 運營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委員會를 統合運營함은 合理的이고도 效率的이라고 思料됨.

가. 改正要旨

- 1) 委員의 任期: 1年 → 2年
- 2) 意見聽取 및 調查對象公務員 所屬局長 또는 課長·民願發生 管轄

洞長 → 所屬局長 또는 課長

4. 審査結果: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
----------	-----

제출년월일: '93.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구성원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민원의 적극해결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의견청취 및 조사를 조정하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시달(기예 12209-2212호, '93. 8. 26)

나. 기타: 신구조분 대비표 발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제③항”을 “제④항”으로, “제②항”을 “제③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분쟁의 조정·알선

제 4 조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 10 조 ① 항중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영등포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영등포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민원발생 관할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

부칙을 부칙 제1조로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①(생략) (신설) ② 부당하거나 부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③ 기타 민원사부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①(현행과 같음) ② 분쟁의 조정·알선 ③ 부당하거나 부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④ 기타 민원사부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제 4 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 4 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 10 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영등포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생략)		제 10 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영등포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민원발생 관할 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

개정 1989. 6. 5

개정 1990. 4. 19

개정 1993. 11.

제 1 조(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정(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민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제시 또는 시정건의
- ② 분쟁의 조정,알선
- ③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의 설득
- ④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건의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위원의임기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 7 조(회의의 소집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영등포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제 8 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9 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실 조사계장이 된다.

(개정 '90. 4. 19)

제 10 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영등포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민원발생 관할 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영등포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 11 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